

01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안내

01 학교안전공제 제도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를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에 따라 시행

02 학교 안전사고 관련 법률의 용어 정의

1. 교육활동 (법률 제2조제4호)

-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활동
- 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다.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시간 중 활동
- 라.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중 활동
- 마.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중 활동
- 바.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중 활동
- 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중 활동
- 아.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중 활동

2. 교육활동참여자 (법률 제2조제5호)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단, 학교장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우 제외

3. 학교안전사고(법률 제2조제6호)

- 가. 사고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나. 질병 : 학교 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

-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2) 일사병
-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03 공제가입자 및 피공제자(법률 제12조 및 제14조)

- 공제가입자 : 유치원장, 초·중·고등학교장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
- 피공제자 :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04 공제급여 지급 범위

- 가. 요양급여(법률 제36조)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
- 나. 장해급여(법률 제37조)
 -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금액 및 위자료
- 다. 간병급여(법률 제38조)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4 참조
- 라. 유족급여(법률 제39조) :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금액 및 위자료
- 마. 장의비(법률 제40조) :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
- 바. 위로금(법률 제40조의2) :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4천만원 지급

05 공제급여 지급 범위에 대한 주의사항

가. 학교안전사고와 교육활동과의 인과관계(법률 제36조)

-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교육활동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인정함.
- 질병의 경우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제한됨.
- 학교안전사고는 ①급격성, ②우연성, ③외래성, ④사고 원인의 독립성, ⑤신체상해의 발생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나.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시행령 제2조)

-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여부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해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다. 교육활동 전후의 학교체류시간 중 사고

- 교육활동 전후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통상 1시간)을 벗어난 사고는 공제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ex) 종례 후 하교하지 않고 축구를 하던 중 부상

라. 소풍·수학여행, 수련활동 및 교외학습활동 등

- 해당 시설(숙소, 체육시설, 수련시설, 자동차 등)에서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보상 또는 배상 받은 경우 부족분 지급

마. 공제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법률 제65조)

-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바. 사고발생일과 병원 내원일이 상이할 경우

- 사고가 교육활동 중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제출해야 함.

ex) 보건일지, 목격자진술서, 초진진료기록지 등

사. 체육특기생의 훈련 또는 대회 출전 중 발생한 사고

- 훈련일지, 대회참가확인서 등 반드시 첨부해야 함.

아. 교내외 특별활동 및 방과 후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

- 야외활동, 특별활동 및 현장학습 등 실시계획서 및 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반드시 첨부해야 함.

ex) 방과 후 교육 계획서, 출석부 등

06 공제급여 청구 절차

1. 공동 사항

- 가. 학생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부상한 경우 반드시 학교에 알려 공제회로 사고발생 통지를 하도록 당부
 - 사고에 대한 객관적 입증 필요
 - 공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고는 자체 없이 공제회로 사고발생 통지
 - * 만일, 사고통지를 자체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할 경우 과태료 부과
- 나. 중간청구 횟수제한 없음 : 치료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치료중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 * 공제급여 지급여부 결정을 위하여 공제회는 추가서류를 보완 요청할 수 있음.

2. 학교장 청구 또는 학부모가 공제회로 직접 청구하는 경우

- 가. 학교사용자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 방법
 - <http://schoolsafte.or.kr> ⇒ 학교 로그인(공통 비밀번호 : 1234)
 - 공제급여청구서 작성 ⇒ 출력 ⇒ 공제급여청구서 학교장 직인 날인
- 나. 학부모가 공제회로 직접 청구하는 경우
 - <http://schoolsafte.or.kr> ⇒ 학부모시스템 모바일인증 로그인
 - 공제급여청구 클릭 ⇒ 청구서 작성 ⇒ 검색(or 신규) ⇒ 작성
 - 공제급여청구서 인쇄 ⇒ 청구자 서명 또는 날인
- 다. 병원 치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로 등기우편 발송

3. 공제급여 청구시 제출 서류

구 분	요양급여		장해 유족 급여	비 고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공제급여 청구서 원본	0	0	0	· 공제가입자(학교장) 친인 날인
영수증 원본	0	0	0	· 진료비 및 약제비(약제비는 처방전 첨부)
청구인 통장사본	0	0	0	
진단서 원본	0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0	0	0	· 청구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장해진단서 원본		0		·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별표2】 신체장애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0		

07 공제급여 지급기준

1. 병원영수증 : 퇴원 및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만 인정

- 인정되지 않는 영수증 : 진료비 납입확인서, 간이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 MRI :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 보조기 구입 : 의사의 소견서 및 보조기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원본)가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
-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

2. 공제급여 지급 시 제외되는 항목

- 비급여 주사료(예외적으로 무통주사 인정)
- 비급여 입원료(병실치료비) 및 보호자 식대
- 비급여 물리치료비, 비급여 한방치료비 및 침약비용 등

3. 치아보철

- 보철치료비 : 1대 당 40만원 한도 지급(2회에 한함)
- 레진 및 포스트 : 1대 당 레진(12만원), 포스트(12만4천원) 한도별 지급(1회에 한함)
- 임플란트 : 1대 당 200만원 한도 지급(1회에 한함)